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71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전용기 · 박지원 · 윤준병
이연희 · 안태준 · 정준호
문진석 · 이건태 · 허성무
서영교 · 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

1항제4호 신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3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p> <p>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② ~ ⑧ (생략)</p> <p>제33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u><신 설></u></p>	<p>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p> <p>①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것</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u></p>

<p>2. (생략) ③·④ (생략)</p>	<p><u>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	---